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및 개설허가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으로 그 제출을 대신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를 제1호,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종류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신고(허가)번호		
기관의 장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면허번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의
무
의

기관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명세서 2. 관할 보건소가 발급한 현지확인 의견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의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같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인등록번호 :

신청인(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검토 (현지확인) → 접수 및 검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보건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①~② (생략)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명세서 3. 관할 보건소가 발급한 현지 확인 의견서 ④~⑧ (생략)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 삭 제 > 1.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명세서 2. 관할 보건소가 발급한 현지 확인 의견서 ④~⑧ (현행과 같음) ⑨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u>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u>다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